

대구예술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예술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구예술대학교의 창조적인 대학 문화 창달과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통합하고 문화적 창조 행위를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원의 민주화와 자율화와 실현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는 대구예술대학교내 소재를 둔다.

제4조 (구성) 본회는 본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와 그 동아리 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등록된 동아리의 대표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및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하며 재정부담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동아리인 총회
2. 동아리 대표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부 및 동아리 분과

제7조 (특별기구) ① 본회는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본회 회장이 구성한다.

제8조 (본회의 학교 운영 협의)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당국과 협의, 조절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해 학교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1. 동아리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경우
2. 동아리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결정에 대한 사항
3.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 회원에 관한 건
4. 기타 본회의 제반회의에서 그 회의 의장과 학교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외의 참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동아리인 총회

제9조 (구성) 동아리인 총회는 정식 등록된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① 동아리인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② 동아리의 친선도모와 동아리인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한다.

제11조 (의장) 동아리인 총회의장은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맡는다.

제12조 (소집) ① 동아리인 총회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등록된 동아리의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판단하에 단독 소집할 수 있다.

② 동아리 총회는 7일전에 공고하며 단독 소집시 즉시 공고를 낸다.

제13조 (의결)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동아리 대표자 회의

제14조 (지위)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실질적인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이며 일반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구성)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운영위원과 각 동아리의 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 부재시 회장의 위임장에 따른 1명을 참가시켜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의장)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① 본회의 활동과 학교당국의 사무에 관한 서류제출 및 학교 당국자의 출석요구

② 임시 특별 기구 설치에 관한 인준권

③ 집행부서와 분과의 신설, 통폐합권

④ 회장단의 불신임 발의 및 회칙 개정안 의결권

⑤ 운영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18조 (소집)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3, 6, 9,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동아리대표자의 1/3이상이상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소집공고는 3일 이전에 해야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제외한다.

4. 회의 재적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또한 과반수 참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통보하여 모인 대표자에 한해서 의결하며 그 의결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의결)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사항은 재적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장단 불신임 발의 및 회칙 개정안 의결은 재적 동아리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의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긴급을 요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집행하며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사후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 이다.

제21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 한다.

2.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3. 각 분과의 예결산안을 심의한다.
4. 임시회의 소집요구권
5.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참석 및 활동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회칙 개정안 발의권
7.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8.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을 대표자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9. 신규 등록 동아리의 자격을 심의 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
10.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업무 및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1.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동아리를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

제23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다.

1.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제24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집행부

제25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6조 (구성)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부장, 기획부장, 총무차장, 기획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대표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며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을 집행한다. 동아리 대표자 회의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및 임원

제28조 (회장의 지위와 역할) 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총회,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③ 동아리인들의 모든 자율적인 행사를 주관하며 제반 업무상황을 관할한다.

제29조 (회장의 임무) 전체 동아리인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0조 (회장의 권한)

1. 총회 소집 요구권
2.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소집권

3. 집행부서 및 특별기구 구성권
4. 집행부장과 특별기구장 임명권
5. 회칙 개정안 발의권
6. 징계 발의권
7. 예산 집행권
8.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9.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

제31조 (부회장의 지위와 권한)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회장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총회,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32조 (각 부서의 지위 및 권한)

1. 총무부 :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한 재정을 담당하고 회의기록 및 출판물과 도서를 관리하고 본회에 필요한 모든 통보를 담당한다.
2. 기획부 : 모든 본회 활동을 계획하며 공문을 작성 보관하고 동아리인의 인권복지와 동아리의 사업 및 행사에 관한 실무집행을 담당한다.

제33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단의 연임이 가능하다.

(단 회장단도 부장이 가능하다.)

제34조 (임원의 신분보장)

1. 회장 및 부회장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 및 총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2.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5조 (탄핵 및 해임의결)

1.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본회 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업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개별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은 재적인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집행부의 각 부장 및 특별기구장에 대하여 해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의결된 경우 회장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
4. 해임의결은 재적인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 7 장 분과회의

제36조 (목적) 각 분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과에 맞는 활동을 촉진하며 분과내 의 발전에 노력한다.

제37조 (구성)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38조 (분과 회의의 업무 및 권한)

1.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의 제반 활동에 대한 사무를 토의한다.
2. 총 동아리 연합회의 행사를 분과별로 주관해서 담당한다.
3. 각 분과의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한다.
4. 신규 동아리 등록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5. 소속된 동아리의 활동을 매 학기마다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분과 집행부의 인준권이 있다.

제39조 (소집)

1.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분과회의가 소집된다.
2. 분과장의 요구가 있을 시 분과회의가 소집된다.
3. 재적 동아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분과회의가 소집된다.

제 8 장 분과장

제40조 (지위)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운영위원이 된다. 또한 분과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1조 (자격) 본회의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자에 한한다.

제42조 (임무 및 권한)

1. 분과 회의 소집권
2. 분과 예산 집행권(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참석률이나 총동아리 연합회 사업에 있어서의 참석률 등을 예산집행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분과별 특성에 맞는 예결산을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3조 (선출) 분과장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에 회장단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며 소속 동아리 대표자 외에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재정

제44조 (수입) ①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의 본회 예산, 교비보조금, 동아리 등록비로 한다.

② 연합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익금이 된다.

③ 각 사회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45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① 본회의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편성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상정한다.

② 본회의 예산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집행한다.

③ 각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대구예술대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하여 총동련 사업과 부합될 때 우선 순위로 한다.
2. 대구예술대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지원한다.

3.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 (예산 및 결산 보고) 예산과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47조 (예산 집행)

1. 예산 심의, 편성된 내용을 총무부장이 집행한다.
2. 예비비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총무부장이 집행한다.
3. 연합회에서는 행사가 있는 동아리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이월) 매 회기 흑자 잉여금은 다음 회기의 예산으로 자동 이월된다.

제49조 (이의 제기) 예산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 동아리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재 심의한다.

제 10 장 재등록

제50조 (재등록) 기존 등록을 필한 동아리는 재등록 기간내에 재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연합회 양식에 의거한다.

제51조 (등록 기간) 매년 3월, 9월 셋째주말까지 한다.

제52조 (구비 조건)

1. 동아리 회칙 1부
2. 15명 이상 서명한 회원명단 1부
3. 동아리 소개서, 전학기 동아리 실적 보고서
4. 차학기 동아리 활동 보고서
5. 등록비

제 11 장 신규등록

제53조 (등록 기간) 신규 동아리는 분과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승인으로 가 등록 된다.

제54조 (등록 조건)

1. 동아리 회원 10명 이상인 동아리(타 동아리 회원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2.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뚜렷한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3. 3개 학과 이상으로 회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 학과 동아리로 분류된다)
4. 소속분과 분과회의의 2/3이상의 동의와 분과장의 추천서를 받은 동아리
5. 신규 동아리는 등록수 한학기 동안의 가등록 기간을 거친다. 가등록 기간 중의 신규 동아리는 모든 동아리 활동이 보장되나 의사 결정권은 가지지 못한다.
6. 가등록 한학기 후 대표자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정식 동아리로 인정 된다.

제55조 (방배정)

1. 동아리방은 정식 동아리중에서 본회에서 배정하며 배정기준을 운영위원회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학과 동아리는 학과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분과 동아리는 근접시켜 배정한다.
(소음이 있는 동아리는 소음이 있는 동아리끼리 근접시켜 배정한다)
3.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폐지한다.

제 12 장 징 계

제56조 연합회나 동아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이나 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57조 (경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경고 한다.

1.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2회이상 불참한 동아리
2. 분과회의에 2회이상 연속 불참한 동아리
3. 동아리 활동이 부진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경우
4. 예산 집행이 행해진 동아리 행사가 실행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반납을 요구했을 때 이의 불이행시
5. 전체 동아리에 저해되는 행위의 발생시
(회원 개인의 행위는 소속 동아리에서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동아리

제58조 (등록 취소) ① 1년 동안 2회 경고를 당한 경우 자동적으로 등록 취소된다.

② 의결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동의로 취소된다.

③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3일 이내에 회장이 공고한다.

④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동아리 명의로 학내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회장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통보한다.

⑤ 추가 등록 기간 내에도 등록하지 않은 동아리는 자동 등록 취소되며 이를 회장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통보한다.

⑥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공고후 2년간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필요한 경우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영구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제 13 장 선거

제59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에 정식등록을 마친 동아리인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가등록 동아리는 제외)

제60조 (피선거권) 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평점 3.0 이상인자로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현직 회장으로 한다.
2. 재적 동아리회장의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10이상 동아리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수 추천 가능)

3. 피 선거권자는 선거일 15일전까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제61조 (선거 시기)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에 실시한다.

제62조 (선거관리위원회)

1. 구성 : 운영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2. 구성시기 : 선거개시 2주일 전까지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4. 업무 및 권한

가. 입후보자 자격 심사

나. 선거인 명부 작성

다. 선거 및 당선인 유효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라. 재선거 여부 결정

마.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바. 타 기구나 임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칙을 따른다.

5. 선거 절차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일을 선거일 2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다)

나. 유세는 2회 이내로 하고 자율적인 선거운동을 인정한다.

6. 후보자 등록 - 후보자는 선거개시 7일 이전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학력 및 간단한 자기 소개서

나. 사진(4×5) 3매

다. 재학 증명서

라.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후보 등록원

7. 당선

가. 재적 동아리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며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 다수 득표자 2인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나. 재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다시 투표한다.

다. 3차 재 투표시 고 학번 재로 한다.

8. 보궐선거

회장, 부회장 유고시 또는 탄핵될 시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기간이 100일 미만일 경우는 집행부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권한 대행을 한다.)

제 14 장 회칙 개정

제63조 (발의) 본회의 회칙개정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의 발의

2. 동아리 대표자 1/4이상의 발의

3. 재적 동아리 10개 이상의 회원 300인이상의 발의

4. 운영위원 1/2이상의 발의

제64조 (의결의 발효) ① 회칙개정 의 발의시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이를 직시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확정된 개정안은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규약의 개정) 본회의 회칙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관례에 따르며 특별히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규약을 정할수 있으며 이는 회칙보다 하위에 둔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